

이슈페이퍼 2013-15

취업모의 근로여건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과제

민정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1. 배경	1
2. 문제점	2
가. 육아지원서비스의 비선별적 공급	2
나. 개인대리양육 서비스의 부족	3
3. 연구 결과	5
가.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5
나. 어머니 근로 형태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7
다. 가구 경제수준 및 어머니 근로소득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9
라. 소결	13
4. 정책제언	14
참고문헌	18

표 차례

〈표 1〉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관련 사업 개요	4
〈표 2〉 돌보미와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및 관리 체계	5
〈표 3〉 어머니 취업 교차비 - 경제수준별 비교	11
〈표 4〉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교차비 - 경제 수준별 비교	12

그림 차례

[그림 1] 기관 이용률 - 이용 아동의 모취업 특성별 비교	2
[그림 2] 기관 대기 현황 - 이용 아동의 모취업 특성별 비교	2
[그림 3] 기관 유형별 어린이집 이용률 - 이용 아동의 모취업 특성별 비교	3
[그림 4] 아동의 연령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 취업모 여부 비교	6
[그림 5] 아동의 연령별 기관 이용 시간 - 취업모 여부 비교	6
[그림 6] 육아지원서비스 활용 유형 -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	7
[그림 7] 육아지원서비스 활용 유형 - 취업모의 직종별 비교	7
[그림 8] 아동의 연령별 기관 이용 시간 - 어머니 종사상 지위별 비교	8
[그림 9] 아동의 취침시각 - 어머니 취업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비교	9
[그림 10] 아동의 수면시간 - 어머니 취업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비교	9
[그림 11] 자녀 연령별 어머니 취업률 - 가구 소득수준별 비교	10
[그림 12] 자녀 4세시기 어머니 취업률 - 경제수준별 비교	10
[그림 13] 자녀 연령별 육아지원서비스의 활용 - 가구소득 수준별 비교	12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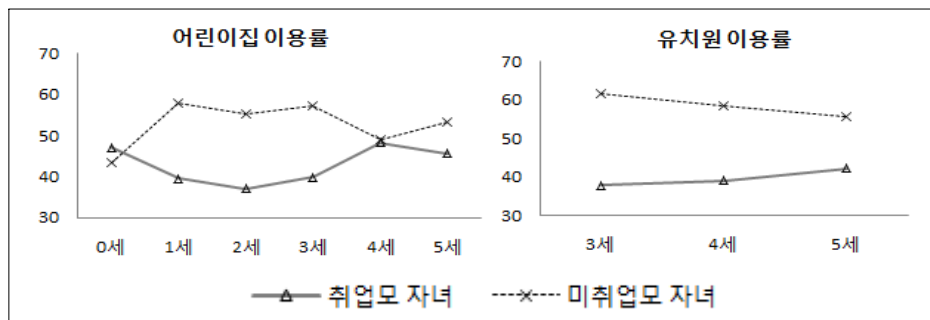
- 고령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률 제고가 국가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여성 취업률도 현재 53.5%(2012년 기준)에서 2017년까지 61.9%를 목표로 8.4% 상향 조정되었음.
 - 이를 위해서는 연령대비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극감하다가 40대 후반에 회복되는 경력 단절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
 -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인 안전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육아 병행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취업모는 보육기관의 입소 우선순위 요인 15가지 항목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어 실제 이용 우선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임.
 - － 영아기 모성취업률보다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나라인 것을 보아도 필수적 이용계층으로서 취업모에 대한 큰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취업모 중에서도 근로 형태(종일제, 시간제 등) 및 소득 수준에 따른 필요와 선호도가 다양하나 이에 대한 차등적 지원이 없는 실정임.
 - － 전면 무상보육 도입으로 근로소득이 낮은 어머니의 근로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음.
 - － 한편 상대적으로 고소득의 장시간 근로 취업모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없어 결과적으로 고학력 여성도 장시간 근로와 양육 병행이 어려워 경력 단절을 겪음.
 - 본고에서는 취업모가 겪는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 취업 및 근로형태, 근로소득에 따라 연령별 육아 지원서비스 이용 정도와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하였음.

2. 문제점

가. 육아지원서비스의 비선별적 공급

1) 전계층 보육·교육료 지원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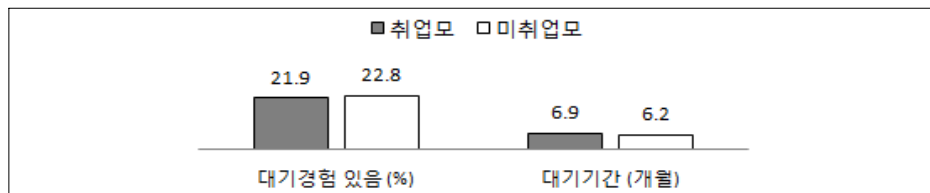
- 2012 보육 실태조사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취업모 자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 모두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 크게 다르지 않았음.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어린이집 0세를 제외하고 미취업모 자녀가 취업모 자녀보다 더 높음.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p. 141.

[그림 1] 기관 이용률 - 이용 아동의 모취업 특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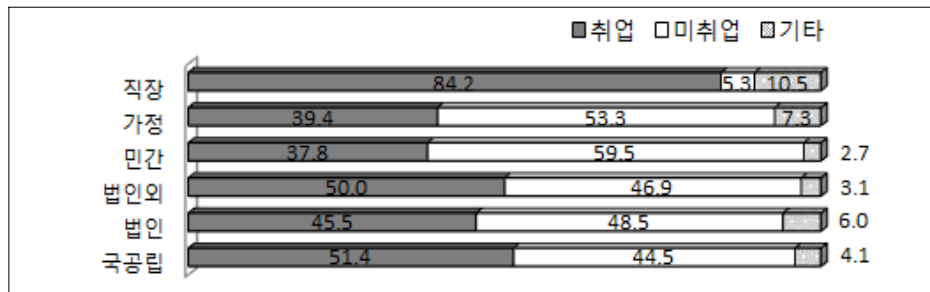
-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의 보육·교육기관 입소 전 대기 경험여부와 대기 기간도 큰 차이 없음.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p. 147.

[그림 2] 기관 대기 현황 - 이용 아동의 모취업 특성별 비교

-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모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모 자녀에 대한 실제적 혜택은 미비함.
- －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모취업자 비율이 84.2%라 해도,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 비율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취업모 자녀가 이용하는 사례는 적어 실제로는 극히 소수 취업모에게만 직장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임.¹⁾



주: 모취업 특성 중 휴직중, 부재 등은 기타로 분류함.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p. 141.

[그림 3] 기관 유형별 어린이집 이용률 - 이용 아동의 모취업 특성별 비교

- 일괄적인 보육·교육료 지원으로 미취업모 자녀의 기관 이용 수요가 커져 시설 이용이 필수적인 취업모 자녀는 갈 곳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그러나 취업모 중에서도 근로 특성별 맞춤형 보육·교육 이용안을 마련하고 이용료를 지원한다면 취업모 모두가 일원화된 종일제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경쟁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취업모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개인대리양육 서비스의 부족

- 현행 개인대리양육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있음.

¹⁾ 2012년 전체 보육 아동 수(1,487,361명)×직장어린이집 비율(2%)×모취업자 비율(84.2%)=25,047명의 취업모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함. 이는 보육시설 대상 영유아(06~12년생) 3,265,160명의 0.8%에 불과함.

〈표 1〉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관련 사업 개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가정 보육교사 제도
목적	- 보육시설 중심의 자녀 양육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 내 자녀 양육 선택권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 충족		- 일가정 양립 수요자 맞춤 보육 • 근로형태가 다양한 맞벌이 가정의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보육 간 선택권 보장
대상	시간제 만 12세 이하	영아 종일제 만0세	- 경기도민 맞벌이 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아 • 0세아 우선 연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 우선연계 • 기본 보육료와 취업여성지원비를 아동 연령별, 출생순위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
	- 연 480시간 지원 - 취업 한부모, 저소득 가정 우선지원	- 월200시간 - 모든 취업부모 가정 대상	
사업 결과	- 2011년 37,934가구 - 2012년 31,847가구	- 2011년 1,204가구 - 2012년 2,140가구 ¹⁾	2011년 1,400 가정 연계, 2012년 1760가정 연계 계획(2011.1 현재)

주: 1)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출생자를 기준으로 2011년 0.25%, 2012년 0.46%에 해당됨.

□ 가정 내 개인대리양육서비스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나 사업규모가 매우 작아 실제 취업모가 활용 기회를 얻기 힘들.

- 두 사업 모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돌보미/가정보육교사의 활동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즉 시간제로 활용하여도 1일 1~2건 보육이 가능하므로 다수의 돌보미/가정보육교사의 확보가 필요함.
- 현재는 저소득 가구에게 고비용의 개인대리양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둠.
- 저소득 계층을 우선지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상기 두 사업은 개인대리양육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는 고소득 계층에게는 사실상 이용 기회가 없는 셈임.
- 그러나 두 사업에서 돌보미/가정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확대되어 고소득 취업모들에게도 돌보미/가정보육교사와의 상시연계가 가능해진다면 서비스 이용 지원비가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대리양육 서비스 제공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어 활용도가 높은 제도가 될 것임.

〈표 2〉 돌보미와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및 관리 체계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가정 보육교사 제도
자격 요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교사 자격 또는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 -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 아동복지법 위반 시 지원 불가	- 보육교사 자격(1-3급)을 취득하고, 출산육아경험이 있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리 체계	- 자질, 인성, 능력을 면접 심사함 -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30시간) 및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해야 함 - 활동일지 작성하여 보고하며 아동 폭행, 절도 등이 있을 때 돌보미 자격 중지 또는 취소됨	-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사를 서류,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직무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함 - 보육일지 기록하여 상호 점검함

3. 연구 결과²⁾

가.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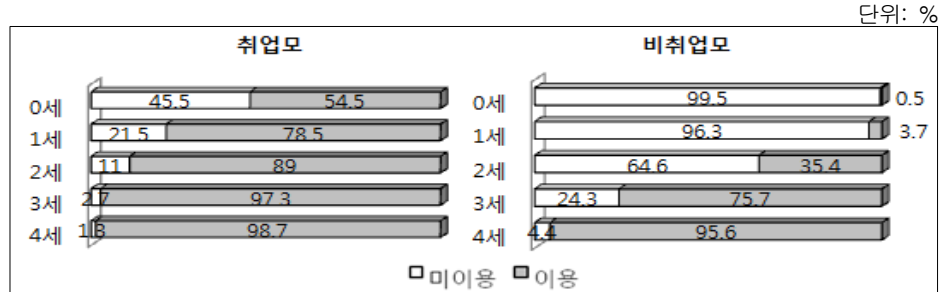
□ 취업모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³⁾은 필수적임.

- 자녀 0세 시기에 취업모 중 45.5%가 휴직하였고, 과반수의 취업모는 근로를 지속하기 위해 부모의 직접 양육을 포기하고 육아지원서비스³⁾를 이용함.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률에 대한 취업모 여부의 차이는 사라짐. 만 4세부터 어머니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육아지원서비스를 95%이상 이용함.
- 취업모 자녀는 비취업모 자녀보다 육아지원서비스를 18.8배(CI: 15.6-22.5)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⁴⁾.
 - 그러나 취업모 모두가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영아기에는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2) 2008년에 출생한 한국아동패널 2,150명의 5개년도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자료의 한계로 2013년부터 시행된 전계층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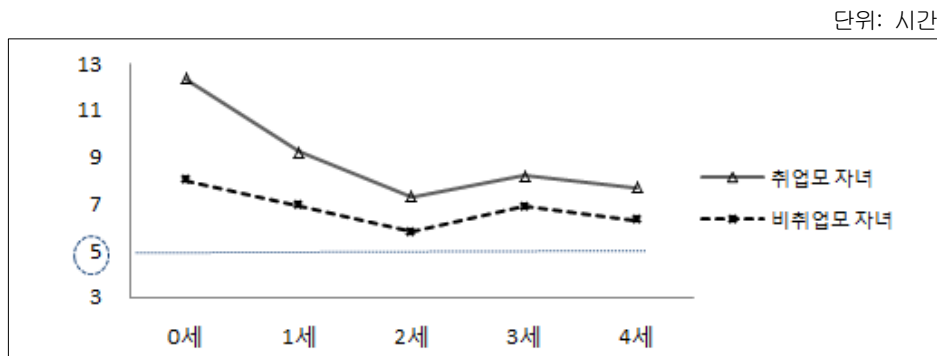
3) 육아지원서비스는 부모가 낮시간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거나, 개인대리양육 서비스(혈연, 비혈연 포함)를 활용함을 의미함.

4) 어머니의 출생 시 취업 여부(모 취업자 수: 611명, 모 취업률: 29.4%)가 출생 시부터 5년 간 반복 조사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화추정방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함.



[그림 4] 아동의 연령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 취업모 여부 비교

-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시간은 모취업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음.
-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보다 기관 이용을 더 많이 하는 현상은 0~1세 시기에만 두드러짐.
 - 만 2세 시기부터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이 기관을 5시간 이상 이용함.
 - 어머니가 취업으로 가정에 부재하여 자녀양육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도 보육·교육기관을 3세 이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 한국아동패널 2,150명 중 낮시간 주양육을 기관에서 받았던 아동의 비율은 0세 2.1% 1세 10.1%였음. 그림2의 0세 기관 이용시간은 취업모 자녀 45건, 비취업모 자녀 1건의 자료로, 1세 기관 이용시간은 취업모 자녀 139건, 비취업모 자녀 32건의 자료로 도식화 하였음.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교육 기관은 연령에 따라 다름(0, 1세: 보육시설, 2세: 반일제 이상 학원, 선교원 등 기타 기관 추가 포함, 3~5세: 유치원 추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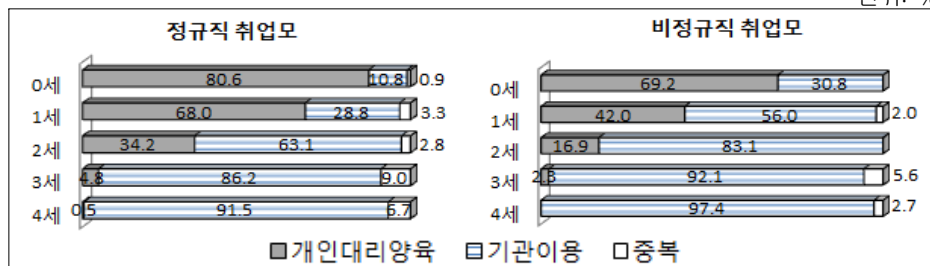
[그림 5] 아동의 연령별 기관 이용 시간 - 취업모 여부 비교

나. 어머니 근로형태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취업모 중에서도 근로형태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중 활용 유형이 다름.

-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일 때 비정규직에 비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확률이 2배 정도 높으며(CI: 1.40-2.90) 대리양육서비스와 개인대리양육서비스와 기관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보다 장시간 근로하게 되어 개인대리양육서비스와 중복이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 어머니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할 때 사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인 경우보다 대리양육서비스나 개인대리양육서비스와 기관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므로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취업모는 상대적으로 기관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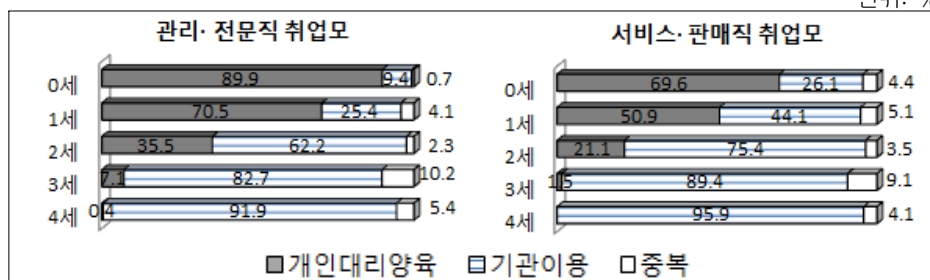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대상자 중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자를 제외하고 이용자에 한해 도식화 함.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과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정의함.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봉사자는 본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6] 육아지원서비스 활용 유형 -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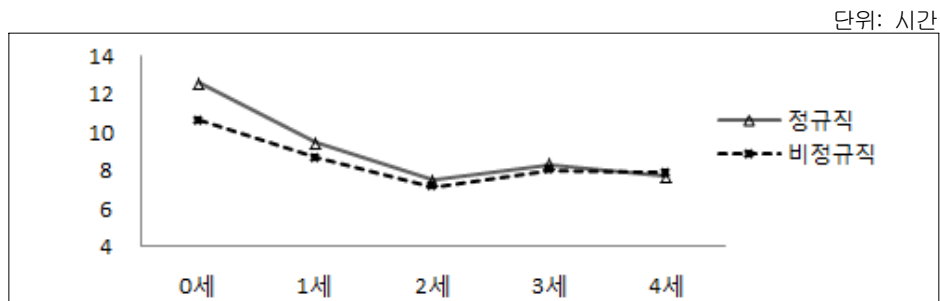
단위: %



[그림 7] 육아지원서비스 활용 유형 - 취업모의 직종별 비교

□ 그러나 기관 이용 시간은 어머니 근로 형태에 따라 큰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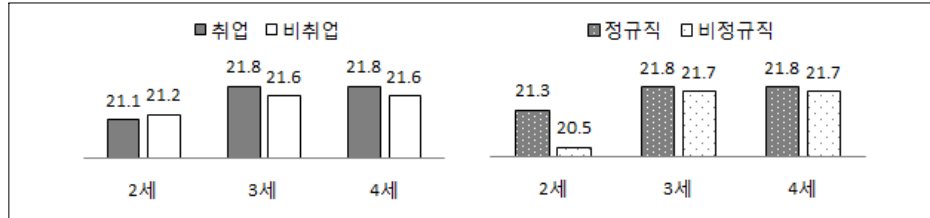
- 정규직 취업모의 자녀가 비정규직 취업모의 자녀보다 기관 이용 시간이 0~1세 시기에는 1시간 56분, 50분으로 차이가 있었음.
- 그러나 만 2세 시기부터는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아동의 기관이용 시간은 30분 이내로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어머니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보육·교육 기관의 이용가능시간을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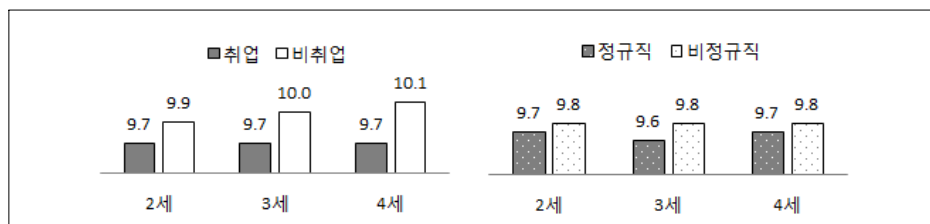
[그림 8] 아동의 연령별 기관 이용 시간 - 어머니 종사상 지위별 비교

□ 어머니 근로 특성에 따라 자녀의 취침시각과 수면 시간도 다름.

- 만 3세 기준으로 비취업모 자녀 취침시각 21시 48분, 수면시간 10시간에 비해 취업모 자녀는 평균 12분 늦게 자고 18분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취업모 중에서도 정규직 취업모의 자녀가 늦게 자고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장시간 근로의 위험이 높은 종일제 취업모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 이를 기다리는 자녀의 생활시간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음.
 - － 취업모 자녀의 수면시간이 비취업모 자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나, 자녀의 성장에 어머니의 근로 형태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판단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근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9] 아동의 취업시각 - 어머니 취업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비교



[그림 10] 아동의 수면시간 - 어머니 취업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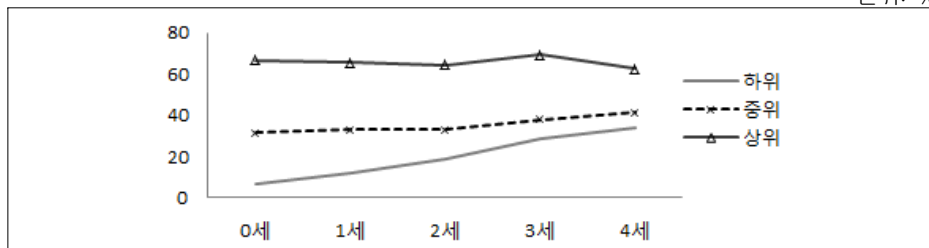
다. 가구 경제수준 및 어머니 근로소득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현황

- 자녀 출산 후 어머니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개인의 취업 상태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보임.
 - 한국아동패널 전체 어머니의 취업률은 출산 해부터 자녀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29.4, 31.4, 33.3, 39.9, 42.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유자녀 여성 취업률이 출산 후 점차 회복되고 있음.
 - 그러나 어머니 개인의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지속성과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취업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전체의 52.2%이지만, 출산 후 5년 동안 취업모가 취업을 포기한 경우 14.5%, 비취업모였으나 취업한 경우 12.4%로 유동적이었음.⁵⁾
- 경제 수준이 높을 때 어머니 취업률이 높았음.
 - 출산 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별로 어머니 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가구 소득이 하위군(240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중위군(241~454만원), 고위군(455만원 이상)에 속할 때 어머니 취업률이 높았음.

5) 본 결과는 아동패널 2,150명 어머니의 출산 시 부터 5년 동안 취업변화를 전이확률로 분석한 것임.

-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위군에 속한 경우 어머니의 취업률은 자녀 0세부터 4세까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하위군에 속한 경우 어머니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 － 출산 시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위군에 속한 경우 자녀가 0, 1세에도 어머니가 취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62% 이상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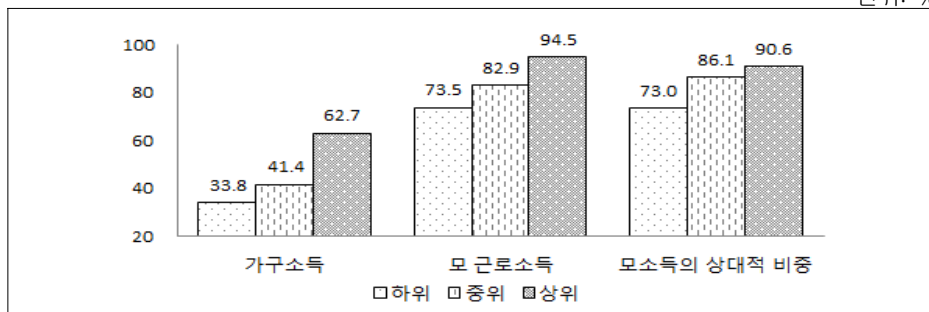


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하여 상·하 30% 기준금액에 근거하여 상위(455만원 이상), 중위(241~454만원), 하위(240만원 이하)로 분류함.

[그림 11] 자녀 연령별 어머니 취업률 - 가구 소득수준별 비교

- 어머니의 근로소득과 가구 전체 소득 대비 어머니 근로소득의 비율에 따른 어머니 취업률 비교 결과도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단위: %



주: 가구소득은 출생 시 자료를 활용하였고, 모 근로소득은 한국아동패널에서 2011년(만 3세)시기부터 조사되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어머니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대비 모 근로소득의 비중을 상위(100만원 이하; 25% 이하), 중위(101~250만원; 26~50%), 하위(251만원 이상; 51%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만 4세 때 모 취업률을 비교함.

[그림 12] 자녀 4세시기 어머니 취업률 - 경제수준별 비교

- 어머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률이 높게 나타남.

□ 즉, 어머니의 취업은 가구의 소득, 어머니의 근로소득, 가구소득 대비 어머니 근로소득 비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가구의 경제수준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기여율이 클수록 출산 후 어머니의 취업을 회복이 더 빠를 수 있음.
- 경제수준 지표에 상위집단에 속할 경우 하위집단 보다 어머니가 취업할 확률이 4배(CI: 2.7-5.5)에서 11배(CI: 7.6-16.7) 높게 나타남.

〈표 3〉 어머니 취업 교차비 - 경제수준별 비교

영향변인	(수)	어머니 취업 교차비		
		Odds ratio	(95% 신뢰구간)	z
자녀 연령	(2,150)	1.17	(1.14-1.19)	15.57***
가구 소득	(2,065)			
하위(240만원 이하)	(667)	1.00	(reference)	
중위(241~454만원)	(1,070)	2.05	(1.71-2.45)	7.67***
상위(455만원 이상)	(328)	7.94	(6.22-10.14)	16.62***
어머니 근로소득	(672)			
하위(100만원 이하)	(125)	1.00	(reference)	
중위(101~250만원)	(384)	3.58	(2.71-4.72)	9.02***
상위(250만원 이상)	(163)	11.24	(7.58-16.66)	12.04***
가구 소득 대비 어머니 근로소득 비율	(667)			
하위(25% 이하)	(164)	1.00	(reference)	
중위(26~50%)	(372)	3.33	(2.56-4.34)	8.93***
상위(50% 이상)	(131)	3.85	(2.71-5.47)	7.53***

주: 출생 시 경제수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중-하위로 구분하고 어머니의 취업 확률을 경제수준 하위집단에 대한 중, 고위집단의 상대적인 교차비 형태로 산출함. 일반화추정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세 가지 경제 수준 관련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함.

* $p < .05$, *** $p < .001$.

□ 이와 같이 가구 월평균 소득과 어머니 근로소득 및 가구 소득 대비 어머니 근로소득의 비율이 높을 때 공통적으로 어머니 취업률이 높은 현상은 가구 경제에 대해 어머니의 기여율이 클수록 출산 후 자녀 양육보다 어머니의 취업을 더 중요하게 여겨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높으면 가족 내에서 어머니 취업의 당위성을 찾거나

주변(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관계)의 지지를 받기에는 용이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아기 자녀 양육을 선택하고 휴직하는 데에 주변의 동의와 직장에서의 이해를 구하는 데 어려울 수 있음.

- 반대로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낮으면 자녀 양육보다 자신의 취업을 우선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양육수당 지급의 영향으로 본인의 근로에 대한 주변의 이해를 얻기 힘들어 어머니의 취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취업모 중에서도 경제 수준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정도가 다름.

- 가구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가정 내 부모 양육보다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큼.
- － 경제수준 지표에 상위집단에 속할 경우 하위집단 보다 자녀가 부모 보다 육아지원서비스에 의해 양육될 확률이 약 5배 정도 높음.

〈표 4〉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교차비 - 경제 수준별 비교

영향변인	(n)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교차비		
		Odds ratio	(95% 신뢰구간)	z
자녀 연령	(2,150)	3.27	(3.14-3.40)	57.40***
가구 소득	(2,065)			
240만원 이하	(667)	1.00	(reference)	
241~454만원	(1,070)	1.32	(1.13-1.55)	3.44***
455만원 이상	(328)	5.20	(4.18-6.49)	14.68***

주: 부모가 낮 시간 주양육자가 아니고 대리양육자(혈연, 비혈연 포함) 또는 기관을 이용하거나 이를 중복 이용할 할 경우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자로 정의함.

본 표의 내용은 <표 1>과 동일한 분류 기준과 분석방법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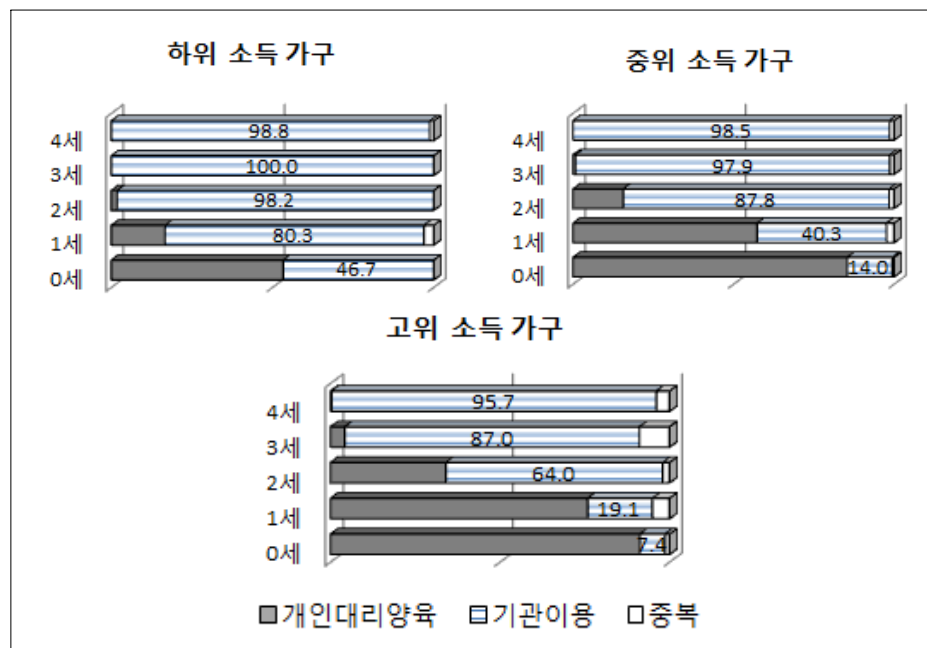
* $p < .05$, *** $p < .001$.

□ 취업모 중에서도 경제 수준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의 활용 유형이 다름.

- 출산 시 가구 소득수준별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가구소득 하위 집단에 비해 중위, 고위 집단에서 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 자녀 2세시기 기준으로 기관 이용률은 가구소득 하위집단에서 98.2%, 중위 87.8%, 고위 64.0%였고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이용률은 가구소득 하위 1.8%, 중위 16.6%, 고위 34.0%로 나타남.
- － 기관과 개인대리양육 서비스의 중복 이용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

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어머니의 근로소득 및 가구소득 대비 모 근로소득 비중에 따른 분석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관찰되었음.



[그림 13] 자녀 연령별 육아지원서비스의 활용 - 가구소득 수준별 비교

라. 소결

-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어머니의 취업으로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3세 이전부터 비취업모도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재 보육·교육기관의 공급 체제 역시 취업모의 필수적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전계층 양육수당과 무상 보육·교육료 지원은 가구 경제수준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기여율에 따라 중단/지속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행 양육수당과 보육·교육 이용료 지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어머니의 근로형태,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라 활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의 유형이 상이하여 수요자 맞춤형의 육아지원서비스 제공과 적절한 이용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취업모의 육아지원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취업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제도적 지원 없이는 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취업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어 아동이 제대로 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어머니의 낮은 귀가로 자녀의 생활리듬에도 영향을 끼쳐 미래 사회에 문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4. 정책제언

- 현행 전면적 무상보육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의 부작용 우려
 - 전계층의 보육·교육료 전액 지원 홍보 효과로 비취업모의 개인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요구를 더 키울 우려가 있음.
 - 이는 비취업모의 무상 보육·교육에 대한 발생적 수요를 일으켜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취업모의 필수적 보육·교육 시설에 대한 이용권 보장이 어려워짐.
 - － 증대된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양육지원서비스 공급시설이 마련되기까지 취업모의 자녀가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므로 현재 체제로는 취업모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
 - 전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으로 가구 여건 및 아동 특성 상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의 경제적 혜택 때문에 아동이 집에 방치될 위험이 있음.
 - － 저소득/저임금 취업모에게는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해 본인의 근로 효용이 떨어지고 가족과 주변의 양육지원을 받기 어려워 출산 후 취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음.
- 부모의 양육 선택권과 어머니의 취업 권리 모두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함.

- 저소득/저임금 취업모가 종일제 위주의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이외에도 가정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서비스가 다양할 때 자신의 취업권과 자녀양육권의 중요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 아이돌봄 지원사업,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 제도 등의 개인대리양육서비스의 규모를 확대하여 저소득/저임금 취업모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이용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자신의 취업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고임금 취업모는 개인대리 양육서비스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보육·교육료와 양육수당 전액지원의 효용은 크지 않을 것임.
 - － 현 지원 정책은 기관 서비스 이용금액 또는 현금 지원 위주로 편성되어 이러한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고 개인대리양육서비스를 실제 더 많이 활용하는 고소득/고임금 취업모에게는 효용이 높지 않음.
 - － 이용비용지원이 없더라도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대리양육 도우미를 다수 선발하고 교육·관리하여 취업모의 상황에 맞는 도우미를 상시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고소득/고임금 취업모에게 더 큰 편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5일 종일제 기관 이용을 기본으로 하는 무상 보육·교육 지원체제의 변화가 필요함.
- 향후 어머니 근로형태가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 확충”(관계부처 합동, 2013) 계획의 성공으로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간제” 개념을 육아지원서비스에도 도입해야 함.
 - － 임시직, 일용직 등 규칙적이지 않은 취업모의 기관이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이 주5일 종일제를 기준으로 한 보육·교육료 전액지원 체제를 지속한다면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감당하기 힘들 것임.
 - － OECD 국가의 영아 보육시설 평균 이용시간은 주당 19시간이며(주 5일 8시간 이용 시 주당 40시간 이용하게 됨), 영국과 같이 영아보육 등록률은 41%로 높은 편에 속하더라도 종일제 이용률은 22%, 주당 이용시간은 2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음.⁶⁾

- OECD 회원국에서 무상보육 서비스를 지급 받는 연령은 대부분 만 3~6세부터로 의무교육에 들어가기 전 2년여 간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어(차현숙 외 2009, 문무경 2007, 이어진 외 201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와 같이 영아보육 등록률이 50%에 가깝고 주당 40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데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드물.

□ 어머니의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도 차별화해야함.

-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간제 기관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종일제 취업모에게 필수적인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모 및 비취업모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우선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임.
- 현재 주5일 종일제 기관 이용 위주의 일원화된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시간제 및 근로가 규칙적이지 않은 임시직, 일용직 취업모에게는 시간제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됨.
- 일부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일시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미흡한 실정임.
- 일본의 가족지원센터와 같이 기관 중심이 아닌 지역 내 거주민을 중심으로 일시 양육 수요자와 공급자 회원을 관리하며 회원의 자택에서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보육 요구에 대응하도록 시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한유미, 2006).
- 비취업모에게도 육아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취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플라자 등을 활용하여 근거리 내에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육아 품앗이 사업의 형태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임.

□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위해 유자녀 여성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있어야 함.

-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취업률 저하를 지양하여 여성 취업률을 61.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설정 이전에(관계부처 합동, 2013) 유자녀 여성 근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의식에 대한 숙고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임.

6) OECD Family Database(2013. 8. 15.).

- 영아기는 특히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인데 경제력 상실을 우려하여 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로하여 부모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음.
 - － 일반화된 보육·교육 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나라에서 자녀를 키워주는 데 왜 휴직하느냐는 직장주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영아기 부모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어야 하며 부모의 양육 선택권과 이 어머니의 취업 권리 모두가 존중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함.
- 모성 근로 보호를 위해 사회 제도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한 때임.
- 퇴근이 늦은 어머니를 기다리느라 아동의 생활시간이 늦어지는 현상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유자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미래 사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 취업모의 자녀들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자기조절의 어려움 등 성장기 사회 정서 발달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한국의 장시간 근로 및 야근 문화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취업모의 귀가 시간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퇴근 시간 권고 등 취업모의 귀가 시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 어머니의 근로와 자녀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아 휴직제 사용을 장려하거나 유연근무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 자율제, 스마트 워크 제도 등)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게 세제 감면 등 운영 관련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경기도(2012). 2012년 경기도 지원보육사업안내.
- 관계부처 합동(2013).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2013. 6. 4. 보도자료.
- 문무경(2007). OECD 주요 유럽국가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포럼, 4, 72-85.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국가승인통계 제15407호,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송정·임양미(2011). 경기도 2개년 보육발전계획(2011~2012) 수립(안).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1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매년 상승. 보도자료 2012. 12. 4.
- 여성가족부(2013). 201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이어진·정도영(2012). 영아 무상보육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521, 1-4.
- 차현숙·윤석진·윤계형·장건준(2009).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11-112.
- 한유미(2006). 육아지원정책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의 운영방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1): 23-37.

<참고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